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저작인접권 보호에관한대표적인조약. 1961년 체결됨. 모두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함께 관장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와 최소한의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된 음반의 시판 복제물이나 용기가 최초의 발행 년도 표시와 함께기호P를표시하고있으면보호를받을수있는방식요건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간주하고있다. 우리나라는가입하지않고있다.

실시권의 상호교환

권리자상호간에권리에대한사용허락을해주는계약

실시권 허여자

권리 소유자는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전용 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 범위내에서 통상 실시권을 각각 허여 가능하다.

실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양도나 대여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의 사용을 지칭한다.

신지식재산권

전통적인지식재산권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외새로운형태의지적창작물에대한재산적권리를총칭

신규성

특허등록요건중의하나로종래의기술과구별되는신규한발명기술을말한다. 특허출원전에국내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발명이나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기재된발명은신규성을상실한다.

식물특허

식물에관한발명을특허로보호하는것, 식물특허는크게변종식물또는변종식물의일부분에해당하는발명, 변종식물을육종하는방법의발명, 변종식물의무성번식방법의발명으로대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식물신품종을특허법과종자산업법에의해보호하고있는데, 특허법제31조에서는무성적으로반복생식할수있는변종식물에한해특허를부여하고있으며, 종자산업법에서는유성, 무성번식식물을구분하지않고모든작물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는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 UPOV(식물신변종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에 2001년가입을목표로1999.9월종자산업법을개정및 2000년 중국회비준절차를완료예정에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